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2385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0.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외삼촌이고, 피고는 2005. 12. 3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제1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드단101160호 등, 항소심: 수원가정법원 2022르3436호 등).

나. C는 2020. 10. 2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등)에서 매각되어 2022. 7. 6.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C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차용증)은 제목은 차용증이나, 그 내용에 상품의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원금 포함 마진을 정산하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C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채무원리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수개월 사이에 수회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와 C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원고와 C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인 점, C가 피고와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2022. 9. 16. 선고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드단101160(본소), 2021드단101474(반소) 판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F

G아파트 H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I

구 조 : 철근 콘크리트구조

면 적 : 17 층 J호 84.97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 대 3731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37314 분의 46.376

(B지분 2분의1)

- 이 상 -

